

긴급복지 지원

□ 사업개요

-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계·의료·주거 등 지원

□ 지원대상

-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·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

소득	356.2만원 이하(월 4인기준) 기준중위소득75%이하
재산	농어촌 10,100만원 이하
금융재산	5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)

□ 지원내용

지원종류	지원내용	지원금액	최대횟수	
주 급 여	생 계	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	1,230천원(4인기준)	6회
	의 료	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)	300만원 이내(1회)	2회
	주 거	국가·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 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-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	243,200원 이내 (농어촌, 4인기준)	12회
	복지시설 이용	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-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	1,450.5천원 이내 (4인기준)	6회

□ 신청방법

- 신청장소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제출서류 :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기타 증빙자료

※ 문의 :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(☎061-390-7306)